

소 송 위 임 장

사 건	2005 가량 17421 교수지위확인
원 고	김명호
피 고	학교법인 성균관대학

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수임인을 피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,
아래와 같은 권한을 수여한다.

수 임 인	공증 인기 일신법무법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의4 대영빌딩3,4층 후 1717-3 우암빌딩 3층 송무실(대):595-5500 Fax:593-2559 공증실591-6163/4 Fax:591-6165
-------	---

수권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모든 소송행위 1. 반소의 제기 및 응소 1. 소의 취하, 화해, 청구의 포기 및 인낙, 참가에 의한 탈퇴 1. 복대리인의 선임 1. 목적물의 수령 1. 공탁,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. 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, 담보 취소신청, 동신청에 대한 동의,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, 동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. 상소의 제기 또는 그 취하에 관한 권한
--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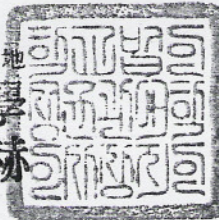
2005 . 3 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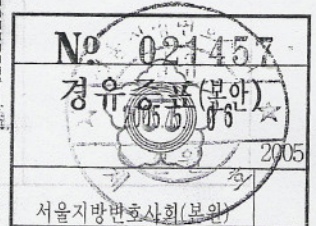
위 임 인

441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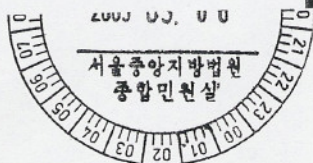
서울特別市 鐘路區 明倫洞3街 53番地
學校法人 成均館大學
理事長 權 彛 赫



변호사회경유



정산일련



一新 번무번이

seogaeng@hanmail.net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7-2,3 우암빌딩 2,3층
TEL 595-5500(대표) FAX 536-9969(2층), 536-4450(3층)

답 변 서

사 건 2005가합 17421호 교수지위확인

원 고 김 명 호

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

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
답변합니다.

답 변 취 지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답 변 사 실

1. 원고가 1996. 3. 1. 피고 학교법인의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은 인정하나, 나머지 원고 주장사실은 부인합니다.

원고는 위 재임용거부 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규정에 따라 1996. 3.
 23. 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같은 해 4. 23. 기각



결정을 받았고, 그 결정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.

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교수재임용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재심,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침해를 구제받아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.

2005. 5.

피고 소송대리인 **일신법무법인**

담당변호사 이 재 원

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3부

귀 중